

의 규정에 의한 工業化의 단계별 育成施策과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民間研究所의 育成支援을 겨냥한 特定 研究事業의 추진은 1990年代 先進国 접근을 위한 전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번 改正된 法에 의하여 이와 같은 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学界, 業界, 研究所의 의견이 結集, 綜合된 Vision이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이러한 觀點을 감안할 때 附則에서 정한 2個月 후의 施行은 그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第10條의 규정을 볼 때 이 法 추진에 있어서 강력한 官의 개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의 범위를 施行令과 施行規



則에서 한정시키도록 政策上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금번 改正된 電子工業振興法에 관한 短見이며 앞으로 이의 合理的인 추진과 수행을 위하여 施行令과 施行規則案의 검토 과정에서 있 어서도 이 法 改正時와 마찬가지로 関

聯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과 의지를 결집시킴으로써 1980年度에는 우리가 熟願하고 있는 電子工業의 振興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特 輯

電子工業振興會의

役割에 큰期待



鄭 世 能

韓國泰雷비(株) 副社長

새로改正公布된電子工業振興法을 대하여 12년 전 대부분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했던電子工業을 輸出戰略產業으로 育成키 위하여 政府 당국의 의지와 業界의 새로운 인식하여 1969년 1월 電子工業振興法이 公布되었던 당시를 回顧해 보면 자못 감개무량함을 금키 어렵다.

1962년 라디오를 처음 輸出하여 輸出產業으로 첫선을 보임으로써 電子工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제1차 經濟開發計劃 기간 중에는 輸出戰略產業으로 지정됨을 계기로 단순한 라디오 組立 단계에서 벗어나 輸出을 위한 大宗產業으로 育成키 위해 国家的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였던바 1969년 1월 비로서 電子工業振興法이 公布施行さ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電子工業振興 8個年計劃을 (1969-76) 수립하였으니, 이때가 韓国 電子工業 발전의 일차 転換期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8個年計劃의 三大振興 목표로서 첫째, 電子機器 54個品目, 電子部品 29個品目, 電子材料 12個品目의 重点開發育成, 둘째, 1971年 1億弗輸出, 1973年 2億弗, 1976年 4億Fr의 輸出 목표 달성, 세째, 振興資金의 조성을 듣고 나왔을 때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지나치게 의욕적인 試圖였으며

政府 当局이나 業界의 일각에서는 이의 달성을 극히 부정적으로 보기조차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開發 대상 品目은 목표 年度에 앞서 開發이 끝났을 뿐 아니라 1974년도에는 5億Fr의 輸出実績을 달성하여 목표를 2年이나 앞당김으로써 우리 業界에는 하면 된다는 自信感을 심어주었고 韓国 電子工業의 앞날을 희망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電子工業에 참여한 企業들의 노력과 의욕이 대단하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政府當局의 강력한 育成施策과 이를 뒷받침한 電子工業振興法에 크게 힘입은 바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電子工業은 1, 2次 오일 쇼크에 의한 對外競爭力 상실, 첼러 TV의 市販規制 등 허다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계속해 1980년도에는 總輸出 175億Fr 중 20億Fr을 電子工業에서 담당하여 輸出 主宗產業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고 電子技術의 꽃이라고 하는 첼러TV를 大量生產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転換期를 맞고 있다. 제품면에서 볼 때 라디오, TV를 비롯한 家電用機器에서 半導體, 컴퓨터 시스템, 電子交換機 등 고도의 產業用機器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며 또한 生產方法에 있어서도 生產施設의 自動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低賃金에 의존한 労動集約의 구조에서 벗어나 고도의 技術集約의 資本集約의 체제로 전환하여야만 하는 電子工業 발전을 위한 第2次의 転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속적인 成長을 위해 보다 강력한 政府의 政策的 지원이 요청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電子工業振興法의 改正이 요구되어 왔던 바 금번 同法의 改正法律이 공포된 것은 時宜適切한 조치로 크게 환영하는 바며 하루빨리 施行令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施策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다.

改定法律의 주요 내용을 보건대,

첫째, 電子工業 高度化計劃의 수립,

둘째, 電子工業振興 基金의 설치 운영,

세째, 電子工業振興會의 特殊法人化로 요약될 수 있는 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転換期에 대처하는 政府와 業界의 의지를 집약하여 반영하였으니 바라건대 高度化計劃의 수립 과정에서 電子工業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業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大企業과

中小企業，機器 業体와 部品 및 素材 業体가 같이 高度化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과거 重工業 분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중복 投資는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電子工業 振興基金의 조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基金의 運用管理面에서 특정 부문 내지는 특정 企業을 위한 基金이 되지 않고 참으로 전반적인 電子工業의 高度化에 기여할 수 있는 基金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電子工業振興會에 많은 業務와 權限이 委任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業界의 의견이 바로 政策에 반영되는 일종의 諮問機關에서 벗어나 執行機關으로서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



크다. 그간의 対政府 窓口 역할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명실공히 電子工業의 振興機關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각 오를 새로이 하여 주었으면 하고, 電子工業에 종사하는 모든 企業은 電子工業振興會는 우리 가 구성하는, 우리를 위한 機

関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다 진밀한 협조하에 현재 맞이하고 있는 第二의 転換期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데서 개정된 電子工業 振興法의 참된 意義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特 輯

振興法 改正 이후의

方向과 課題



朴 希 俊

韓国電子通信(株)企劃担当理事